

#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개발화장실 지정 확대에 따른 시민 위생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법'용어를 '같은 법'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정목적을 명확화(안 제1조)함.
-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미만의 건축물 내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항).
- 개방화장실 지정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시간만 개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 3. 검토의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개방화장실 지정 완화 적용에

대한 대상을 정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 설치를 유도하고,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조(목적)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을 근거법령 앞에 배치하는 내용이며,
- 안 제11조(개발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제1항은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에 대해서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이며,
-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양식에 대한 세부 규정과 지정기간 및 재지정 절차를 세분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정하는 내용임.
- 제5항은 상시 개방하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일정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시간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치 않아 1일 최소시간 개방 기준 등의 별도의 세부규정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하천변 산책로와 같은 긴 노선의 시설물에는 개방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성범죄 예방 등 안전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

#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증진과 종량제 봉투의 물량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작·유통·판매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적용하는 생활폐기물의 범위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3조 제1항)
- 조례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용어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규격 및 종류 확대(안 제10조제2항)
  - 종량제봉투 일반용 1ℓ, 3ℓ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 1,000원, 3,000원 규격 신설
-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반복하여 규정한 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상위법을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유통·판매주체 일원화(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13조제1항)

### 3. 검토의견

- 소량 생활폐기물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량 종량제 봉투 규격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납부 필증 금액의 합리화를 위하여 납부필증 금액을 세분화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은 동 조례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 전체를 적용범위로 수정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한 내용이며,
- 안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항 규정은 상위법령에 맞는 문안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개정하는 내용임.
- 안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및 안 제12조의2(종량제봉투의 안전관리)는 종량제봉투의 제작과 안전관리 주체를 “시장”에서 “시장” 또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 및 공급 등)는 “판매 · 공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를 “제작 · 유통 · 판매 ·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 유통 · 판매 등 대행규정을 새로 정하는 내용임.
- 별표1의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에 소형(5종~7종)구간을 신설하여 소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별표2의 종량제 봉투 규격을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에 포함된 1L, 3L규격을

새로 정하여 소량쓰레기 배출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사항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 신설 규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판매처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격의 봉투를 적절하게 확보해야 하는 수급방안에 대해 세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